

##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변경안내

###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수입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비서류 및 수입확인서 발급기관 변경을 담고 있는 금번 내용 참고하시어 업무상 혼선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 I. 개정 이유

- 오존층에 유해한 특정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파괴확인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종전에는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위탁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석유화학협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 이러한 위탁기관의 변동에 따라 특정물질 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서를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가 발급하는 수입확인서에서 한국석유화학협회가 발급하는 수입확인서로 변경하고자 함

\* 특정물질: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 II.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변경

#### 1.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변경내용

대상법령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대상세번	2903.14-0000, 2903.19-0000, 2903.61-0000, 2903.71-0000, 2903.72-0000, 2903.73-0000, 2903.74-0000, 2903.75-0000, 2903.76-0000, 2903.77-0000, 2903.79-0000, 3827.31-0000, 3827.32-0000, 3827.39-0000	
구비요건	기존	변경
변경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장의 수입확인서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의 수입확인서

#### 2.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 III. 주요 개정내용

#### 1. 위탁기관 변경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오존층에 유해한 특정물질의 특정물질의 파괴확인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위탁기관의 변경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 한국석유화학협회

현 행	개 정
<b>제19조(권한의 위탁)</b>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b>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b> 에 위탁한다.	<b>제19조(권한의 위탁)</b>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b>한국석유화학협회</b> 에 위탁한다.

## 2. 수입확인서 발급기관 변경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특정물질 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서류 발급기관 변경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발급 수입확인서 > **한국석유화학협회** 발급 수입확인서

현 행	개 정
<b>제10조(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b> 영 제10조의8제1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는 영 제9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b>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b> 가 발급하는 수입확인서로 한다.	<b>제10조(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b> 영 제10조의8제1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는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b>한국석유화학협회</b> 가 발급하는 수입확인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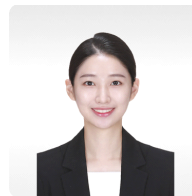
###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
- [붙임2]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 [붙임3]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
- [붙임4]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 [붙임5]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변경

## | Contact



**박영기 관세사**  
 T 070-4353-1531  
 E ykpark@esein.co.kr



**김혜원 관세사**  
 T 070-4353-1596  
 E hwkim@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